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06. 12. 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수립에 따라, 개별법령의 제·개정 사항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개정안을 기준으로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분 감면율 규정(안 제32조)

- 표준 감면율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재정 보호
 -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나.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

-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
-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안 제64조)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하여도 3배로 증액
 - 필지별 300 ~ 600만원 한도(재산가액의 5 ~ 10% 기준)

라. 기타 개정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지하 · 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 규정 삭제
 -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입법예고 실시(2007. 8. 30 ~ 2007. 9. 19) 결과, 의견 제출 없음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27조제8항”을 “영 제42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 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5호 본문중 “제1호의 규모”를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본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본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삭 제 ></u></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생략) 1. ~ 3. (생략) <u><신 설></u></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 본문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u>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p>
<p>제39조 (조성원가 매각) <u>영 제27조제8항</u>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4.(생략)</p>	<p>제39조 (조성원가 매각) <u>영 제42조의</u> ----- ----- ----- ----- ----- ----- 1.~4(현행과 같음)</p>
<p>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생략)</p>	<p>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삭 제 ></p> <p>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u>제1호의 규모</u>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p>	<p>5. ----- ----- ----- ----- <u>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u> ----- ----- ----- ----- ---.</p>
<p>제4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 삭 제 ></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나.(생략)</p> <p>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p>	<p>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 ----- ----- 3,000만원. 1. ----- -----600만원 ----- ---. 가.~나.(현행과 같음) 2. ----- ----- 300만원 -----.</p>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제35조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30>

1.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표적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제42조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30]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전 공공기관에게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④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에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